

#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설명

2013.6.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 1. 개정안은 PKI 기반 전자인증서(X509 digital certificate) ‘기술 자체’를 논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서가 온라인상에서의 신원 확인(authentication) 수단이라느니, 인증서가 안전하다느니, 위험하다느니, 전자서명이 어떤 ‘기술적’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이 개정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논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PKI 기반 전자인증서(X509 규격)가 여전히 사용되고, 이것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개정안 제 2 조에 정의된 ‘전자서명’과 현행법상 ‘공인전자서명’의 정의는 완벽하게 동일하다.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이 안전한 기술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도 같다.

## 2. 개정안은 전자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원래, 인증서는 금융거래 뿐 아니라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만 인증서가 금융거래를 연상하게 하는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인증서 사용을 금융거래에서 강제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서명법도 인증서의 용도를 금융거래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개정안도 같다.

인증서 ‘덕분에’ 금융거래가 안전해졌는지 위험해 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개정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논점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 자체가 기술적 무지를 노출할 뿐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금융거래건, 비금융거래건)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증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는지에 달려있다. 허술하게 설계된 거래 솔루션이라면 인증서를 사용하면 안하거나 위험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솔루션이라면 인증서를 사용하면 안하건 안전하다.

전자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마치 거래가 ‘안전’하게 되는 듯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노출할 뿐이다.

### 3.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한미 FTA 제 15.4 조에 어긋나므로 이미 무효임.

한미 FTA 는 전자서명법보다 나중에 비준된 것이므로 전자서명법 규정이 한미 FTA 와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가 우선한다. 한미 FTA 제 15.4 조는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가 추가):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전자인증을 위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나. [이하 생략]

현행법 제3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공인전자서명’을 그들 간의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제3조 제3항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제3조 제3항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여부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1항은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인증방법의 ‘상호 결정’을 보장하는 한미 FTA 와는 양립할 수 없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사용을 당연히 전제하는 개념이고,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자서명을 할 수 없다.

### 4. 현행법 제3조 제2항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한다.

‘육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조차도 우리 법체제 하에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다. 증거자료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르는 것이고, 육필 서명되거나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이 날인된 문서라고 해서 그 기재내용 대로의 법적 효력을 언제나 인정받는 것

은 아니다.

육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에 대해서 별도의 법규정 없이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변조 여부를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법의 입장이므로, 전자서명에 대하여 육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에도 부여하지 아니하는 ‘법정 추정력’을 부여하는 규정(제 3 조 제 2 항)을 둘 합리적 이유는 없다.

이 규정(현행법 제 3 조 제 2 항)은 90 년대 후반, ‘전자서명’ 기술을 처음 접한 당시 법률가들이 실제로 인증서가 안고 있는 여러 기술적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박하게 품었던 과장된 환상에 기인한 규정일 뿐이고, 이제는 삭제되어 마땅하다.

#### **5. 전자서명이 없는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 조 제 1 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 3 조 제 3 항도 같은 입장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6. 루트인증기관은 반드시 독립적 제 3 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루트인증기관 KISA 에 대한 독립적 제 3 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 KISA 는 그러한 검증을 지금껏 받은 바 없다. 작년(2012)에 와서야 비로소 KISA 도 그 업무 수행의 안전성 여부를 제 3 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기 위하여 준비 중이고, 조만간 만족스럽게 검증을 통과할 것으로 희망한다.

개정안 제 4 조는 루트인증기관에 대한 독립적 제 3 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바, KISA 도 이러한 검증을 통과하기만 하면, 개정법하에서도 지금처럼 루트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안 경과 규정 제 2 조는 “개정 전 전자서명법 제 4 조의 공인인증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

년 동안 이 법 제 4 조 제 1 항의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증을 준비하고 통과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 **7. 개정안은 미래부 장관이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완전 방임’을 표방하지 않는다. 개정안 제 4 조 제 1 항은 인증업무수행 기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미 통용되는 인증업무수행기준(WebTrust, ETSI, ISO 기준 등)에 대해서도 미래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 4 조 제 2 항).

#### **8. 개정안은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미래부 장관이 스스로 정한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라면, 이를 미래부 장관이 차별적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고, 그럴 근거도 없다.

원래, 루트인증기관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KISA 외에 루트인증기관이 하나라도 더 존재하게 되면 인증제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상상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루트인증기관의 ‘제도적 독점’을 보장할 경우, 그 서비스의 품질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정부가 Verisign 만이 “유일한 루트인증기관”이라고 법으로 정하고 독점을 보장해 주고, 제 3 자의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안받아도 되게 해두었다면, Verisign 이 과연 전세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 루트인증기관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술력과 안전성이 증진되는 것이다.

#### **9. 개정안은 국내 인증제도 및 인증기술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 토대를 제공한다.**

현행 ‘공인인증 제도’는 그 정점에 위치한 루트인증기관 KISA 의 신뢰성을 ‘한국 정부’의 권위로부터 도출하려할 뿐, 전문적, 독립적, 정기적 검증에 기초한 신뢰성을 국제 무대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립적 인증제도는 한국에만 독특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행법 제 27 조의 2(상호인정)과 같은 규정을 아무리 뒤 본들 외국정부가 한국의 고립된 인증체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1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인증역무의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는 없다. 그도 그럴것이 외국 정부는 이미 인증 서비스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비하고, 루트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특정 정부의 폐쇄적 권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제 3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국제적으로 승인된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 국가 단위의 고립된 인증제도(현행 ‘공인’인증제도)를 만들어 두고, 외국도 그런 식의 고립된 인증제도를 만들것이라고 막연히 전제한 다음, 그런 외국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공인인증역무’가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상상은, 인증제도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었던 환상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런 미개한 발상을 극복하고, 국내의 인증제도 자체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10.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서비스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 개정안은 국내의 인증업체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독립적 제 3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을 받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감사기준에 따라 검증받은 인증업체들 간에는 차별하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자서명 규정을 참조하고 대폭 반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자서명 규정은 루트인증기관은 반드시 제 3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미국 외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검증을 받은 루트인증기관들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루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다.